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연월일 : 2005. 3.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부문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기능을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제2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제3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제9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

3.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212호 : 2004.3.22.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7호 : 2004.9.6.개정)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1. 기타참고자료(관계법령 등) 사본 각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와 그 소속기구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제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부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사업과 방문복지담당 및 보건소 지역 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과 겸임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는 시장에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2004.3.22. 개정 법률 제7212호]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종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04.9.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97호]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보건복지부 권고안】

00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0조의0 내지 제0조의 00의 규정에 의하여 00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군·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② 대표협의체는 ○○ 시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과 함께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행정과장(사회복지사무소), ○○○과장(보건소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군·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무소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군·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00시·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512호

제 천 시 보

2004. 10. 29(금)

입 법 예 고

제천시공고 제2004-552호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2. 제정이유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부문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견의 등 기능을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제2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제3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제8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결사항의 처리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6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복지사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640-5392/ FAX640-54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